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1566
판결을
중심으로

석면공장 인근주민들의 질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허범행 | 허범행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석사, 행정법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재학(행정법전공)
환경보건협회 자문변호사, 원주지방환경청 자문변호사,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 자문위원,
KNJ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환경기업 고문변호사
tel. 02-584-2770 | h9332@hanmail.net

이 건의 소송 진행경과

가. 피고회사는 1969. 12경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로도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나. 망인A는 1982. 8. 27부터 1989. 3. 2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부근에서(위 공장과의 거리 약 900m) 거주한 자이고, 망인B는 1970. 6. 20부터 1974. 6. 18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 부근에서(위 공장과의 거리 약 2.1km) 거주한 자이고, 원고들은 위 망인들의 자녀들이다.

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비산된 석면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악성종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의 요지

가. 피고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국내 최대 규모였던 이 사건 석면공장은 1969년부터 1990년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면서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석면가루 또는 먼지가 공장 외부로 비산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그 주변환경이 석면가루 또는 먼지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회사는 집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장치를 갖추어 석면가루나 먼지가 석인 공장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장치를 갖추어 석면분진을 통제하였어야 함에도, 석면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회사가 1990년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이 사건 석면공장의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좋지 않은 여론이었던 점, ④ 피고회사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무렵인 1970년대 이전부터 외국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라별로 석면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던 점,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1982년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70년대 당시부터 석면에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근로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정을 추상적으로

나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제품 생산 기업이었던 피고회사로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의 위험성과 그 대책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석면분진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석면노출로 인한 근로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회사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회사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체적 위험성이나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 등 암의 주요 발병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석면으로 인한(특히, 환경적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의 발병

악성중피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면에의 노출로 발병하고, 특히 직업적 노출이 없이도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석면에의 환경적 노출로도 악성중피종이 발병되며, 노출환경에 대한 거리가 중피종의 발병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석면에 대한 비직업적·환경적 노출과 악성중피종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석면공장과 망인들의 악성중피종 발병과의 개별적 인과관계

①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이 유발되는데, 특히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발병원인은 현실적으로 석면에서의 노출이 유일한 점, ② 망인들에게 직업적 노출을 의심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위 망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였던 일대에는 석면 취급 공장은 이 사건 석면공장이 유일하여, 위 망인들의 악성중피종 발병이 이 사건 석면공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추단되는 점, ③ 김모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석면공장 주변 2km 이내의 악성중피종 발생위험이 다른 곳에 비하여 1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 사건 석면공장의 영향이 2km 보다 멀리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회사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과 위 망인들의 악성중피종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회사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석면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과실로 위 망인들의 악성중피종 등이 발생하였고, 위 망인들은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망인들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평 가

이 판결은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의 질환과 석면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공장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인근 주민의 석면 질환에 대하여 최초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